

# 국제민사소송 피고의 보호와 절차보장

양 석 완\*

## 목 차

- I. 머리에
- II. 각 국의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에 관한 소송상 취급
- III. 헤이그송달협약상의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에 대한 조치
- IV. 결 론

## I. 머리에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사법작용인 판결에 있어서도 국제간 유통성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규를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질서의 한 부분으로 파악한다면, 지금의 국제 현실은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판결을 승인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당해 판결의 효력에 국한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효력은 판결이 가지는 일체의 효력이다. 따라서 기판력 뿐 아니라 형성력, 참가적 효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집행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집행력은 승인될 수 있는 효력, 즉 국내로 확장되어지는 효력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판결을 자국 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특별한 주권행사라는 형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판결의 국내집행은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내 판결을 통하여 국내에서 그 집행력이 창설적으로 새롭게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은 직접 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판결의 효력은 한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국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내국으로 그 장소적 범위가 확장된다. 이는 외국판결의 국내 확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탈리아의 경우<sup>1)</sup>와 같이 특별승인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승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외국법원의 판결이 그 곳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내린 분쟁은 한국에서 새로운 소송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송달에 하자가 있거나 기판력을 포함한 당해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 거부되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한국법원의 국제관할이 인정되는 한, 한국법원에서 개시되는 후속절차가 외국법원의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외국송달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각국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편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제도, *remise au parquet* 및 송달영수대리인 제도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송달로써 외국송달을 의제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국에 있는 상대방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이 크다. 이로 인하여 자국의 국민이 외국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와는 다른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국제간 사법공조의 필요성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국가간 판결절차가 상이하고 적어도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주권행사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일응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발전현황과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판결의 승인이 상대방 국가의 절차와의 조화를 위하여 어떠한 이론적 체계 하에서 설명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히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민사소송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장 문제를 다룬다.

1) Art. 797 cpc에 의하면 외국판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승인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된다.

## II. 각 국의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에 관한 소송상 취급

### 1. 한국법에 따른 방식

#### 1) 통상의 송달방법

한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송달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실시 또한 당사자에게 맡겨지지도 않는다. 즉 소장, 상소장 및 판결 등 소송서류의 송달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직권송달주의의 원칙은 외국송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송달이 이루어질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무원에 촉탁하는 형식으로 송달한다.

그런데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법문상으로는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방법은 공시송달 이외의 모든 송달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은 여기서의 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통상의 송달방법이란 교부송달을 의미하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sup> 이 대법원 판결은 실시 중에서 “이 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송달은 그것이 외국판결의 승인국인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정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면 된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송달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법조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만을 제외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 다 2585 판결·(법원공보 1992. 9. 1. 제927호, pp.2395-2396)

송법에 의한 통상의 송달방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了知) 수 있는 송달방법이면 되므로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 또는 송달을 받을 본인·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의 유치송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sup>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외국재판이 한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재판보다 더 엄격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당한 결과로 된다.

앞에서 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개정시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간접관할과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영사추지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보호 및 내·외국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의 절차보장에 관한 동조 제2호 내용은 개정되었다. 개정시안 제217조<sup>4)</sup>의 개정제안이유에 따르면 첫째, 피고에게 실질적인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경우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sup>5)</sup> 둘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제3국 판결이 위와 같은 절차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 추세 그리고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6)</sup>

이에 따라 구(舊)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내용 중 한국민보호 문구('대한민국국민의 경우에')를 삭제하는 한편, 종래의 공시송달 외에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을 삽입함으로써 피고의 절차보장과 관련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절할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조문은 '공시송달'만을 명시하나, 여기에서 공시송달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상의 공시송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랑스법상의 이른바 'remise au parquet'<sup>7)</sup>나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3) 정병석, "외국법원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사송달의 적법여부", 『판례연구』 제6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3, pp.308-309

4)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개정안, 1998, pp.29-30 :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 개정사항, pp.35-36 참조

5)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개정착안점, 1995, p.95

6) *Ibid.*, p.92

7) 이는 서류를 프랑스의 검사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해지는 송달인데 'notification au parquet'라고도 한다. 프랑스 신민사소송법 제684조 제1항 참조

방법에 의한 이른바 '우편송달'<sup>8)</sup>도 여기의 공시송달에 해당한다고 본다.<sup>9)</sup>

## 2) 우편송달

위 1992. 7. 14대법원 판결은 '우편송달'과 '우편에 의한 송달'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먼저 우편송달<sup>10)</sup>에 관하여, 다음에는 우편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우편송달에 관하여, 한국 민사소송법은 송달을 수령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 구조 하에서의 송달은 당사자의 사무가 아닌 법관의 주권행사 행위로 파악되므로, 송달을 담당하는 한국 법원은 외국의 영토 내에 송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재판청구권 내지는 사법보장청구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국내송달로써 외국송달을 의제하거나 또는 상대방 국가의 동의나 국제조약·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송달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송달에 의한 외국송달의 의제는 송달영수인 제도를 들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송달영수인'제도를 두고 있다.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송달받을 자가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민

8) 우편송달을 '우편에 부(付)하는 송달'이라고도 하는 바, 이는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는 구별된다.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189조

9) 김주상,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사법논집』 제6집, 1975, p.501 ; 최효섭, "외국판결의 집행 -신분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제16집, 1989, p.273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박영사, 2002, p.299

10)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우편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점에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된다.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사소송법 제185조-제187조), 이 경우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189조).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송달영수인 지정을 강제하고, 이 경우 우편송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우편송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므로 송달영수인에게 우편송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6조).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거래, 특히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관련계약서에서 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외국기업이 특히 영미법계 국가인 경우에는 관련계약서에서 관할법원의 소재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리하여 송달을 받을 자, 송달대리인(agent for service of process)<sup>11)</sup>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간편한 송달방법을 확보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초래될 절차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당해 법정지법에 따라 송달대리인을 지정하고 외국법원이 그 송달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왜냐 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달의 적법성은 절차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재판국법에 따를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외국법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은 그 자체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외국법원이 직접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2)</sup>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11) 송달대리인과 송달영수인은 (1) 지정의 시기 및 근거, (2) 법원에의 신고의 요부, (3) 변경신고 해태시의 효과 등의 점에서 구별된다. 즉 송달영수인의 지정은 일단 소가 제기되어 계속된 것을 전제로 소송당사자가 관련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하고,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송달영수인의 지정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소송당사자가 이를 변경해 놓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우편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에 반하여, 송달대리인의 지정은 소가 제기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관련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당사자는 송달대리인의 지정을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송달대리인의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관련 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뿐이고, 송달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게 되며 특별히 소송상의 불이익은 없다.

은 기본적으로 사법공조의 제공에 관한 법으로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우리나라가 외국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동법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때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공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동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송달을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주장될 수 있다고 한다.<sup>12)</sup>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할 때 협약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편송달의 방식에 의한 국내 송달에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 3) 공시송달

패소한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또는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제191조에 따라 촉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시송달을 통하여 내린 한국 법원의 판결이 당해 외국에서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송달방법을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공조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의 실시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하게 되므로(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 통상의 송달방법은 물론이고 보충송달과 송달을 받을 본인·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의 유치송달이 허용될 것임은 의문이 없을 것이다. 다만, 사법공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송달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할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회신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 제1항은 증거조사불능만을 언급하고 송달불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송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우리나라 법원이 송달불능으로 회신한 경우 공시송달 기타 의제송달의

12) 정연욱,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한 영사송달의 효력", 『판례해설 1992』, 하반기 18권, p.200 ; 진성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 『섭외사건의 제문제 (下)』(재판자료 제34집), 1986, p.482

1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2, p.371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上)』, 1996, p.601도 송달불능의 회신을 인정하고 있다.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결국 판결국의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sup>15)</sup>

그런데, 헤이그송달협약 제15조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한 뒤에 비로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송달협약과 민사소송법의 해석상 제15조의 요건 구비시 우리나라 법원이 공시송달 없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송달협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제1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제16조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피고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피고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를 구제한다.

그런데 공시송달과 송달영수대리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법공조의 요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94조와 독일 민사소송법<sup>16)</sup>의 경우 공시송달은 '사법공조의 방법'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 4) 사법공조

실제로 한국에 소재하는 피고에 대한 국제적인 송달은 사법공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송달을 할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제11조). 우리나라 법원이 공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제12조). 그 요건은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15) 석광현, 전계서(제1권), p.369

16) ZPO § 203 II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등이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이처럼 '외교상의 경로(diplomatic channel)'를 통한 관할법원에의 촉탁방법, 즉 간접실시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송달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는 2000년 8월 1일자로 발효하였으므로 계약국법원이 한국으로 하는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원행정처를 동 협약 제2조의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 지정하였다.

## 2. 중국법에 따른 방식

### 1) 우편송달

중국민사소송법 제247조는 "우편송달은 발송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송달 회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하여 이미 송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기간 만료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어떤 상황이 "이미 송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는 법원에서 매 사건에 따라 판단한다.<sup>17)</sup>

섭외민사소송에서 우편송달방식의 채용은 반드시 피송달자소재국 법률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 중국법원이 외국에 우편송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국법률이 그 우편송달을 허용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이 방식을 채용하려면 먼저 피송달자소재국 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하는가 혹은 기타의 다른 관련규정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상대국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법원은 이 방식을 채용할 수 없다. 그 반대로 중국이 외국에서 중국 내의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할 때 협약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편송달의 방식에 의한 국내 송달에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sup>18)</sup>

17) 徐宏, 國際民事司法協助, 武漢大學出版社, 1996, p.161

## 2) 사법공조

중국사법협조조약에서 규정한 “사법서류”와 중국민사소송법 중의 “소송서류”는 동일한 개념에 속한다.<sup>19)</sup> 중국법상 문서송달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행위이다. 송달자는 법원공무원이다. 다시 말하면 송달은 인민법원의 직권에 전속되기에 일종의 국가사법권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중국민사소송법 제263조는 사법협조 혹은 대사관·영사관을 통하는 송달경로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어느 외국의 기관 혹은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서류를 송달하지 못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섭외민사소송 중의 송달은 인민법원이 법정방식에 따라 소송서류를 당사자 혹은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섭외민사소송의 송달은 섭외민사소송서류의 국내송달과 국외송달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중국 내에 주소지 혹은 거주지가 있으면 국내 민사소송송달방식에 따라 송달하고, 당사자가 중국 내에 주소지 혹은 거주지가 없으면 아래의 방식에 따라 송달한다.<sup>20)</sup>

먼저, 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조약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송달한다. 다음으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과 피송달자소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중국의 성, 시, 자치구의 고급인민법원을 거쳐 당사자 혹은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중국외교기관에 보내어 중국의교부의 영사사(領事司)에서 중국에 주재하는 당사자소재국의 외교기구에 교부하고 그가 다시 그 나라의 외교기구에 전달한 다음 그 나라 법률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송달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외교부·사법부가 연합으로 규정한 〈중국법원과 외국법원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법률서류의 송달을 상호 위탁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는 중국인민법원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국외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i) 송달하려는 법률서류는 반드시 관련 성, 시,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외교부 영사사에서 책임지고 전달한다.

18) 徐宏, 前掲書, p.160

19) 徐宏, 前掲書, p.130 : 허문일, 한·중 민사사법공조의 현황과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 p.57

20) 章武生主編, 民事訴訟法新論, 法律出版社, 2002, p.581

(ii) 피송달자의 성명, 성별, 나이, 국적 그리고 외국문으로 된 그의 국외의 상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또 그 사건의 기본정황을 외교부 영사사에 알려야 한다.

(iii) 송달위탁서와 송달회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 밖에, 피송달자가 위탁한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다. 피송달자가 소송대리인을 위탁하고 권한수여위탁서에 그 대리인이 소송서류를 대신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했으면 인민법원은 그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송달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혹은 송달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 분사무소, 업무대행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런 송달방식은 주로 피송달자가 외국 기업 혹은 조직인 경우에 활용된다. 외국기업 혹은 조직이 중국 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그들이 설립한 대표기구를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대표기구가 없지만 중국 내에 분사무소 혹은 업무대행인이 있으면 그들이 소송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만 하면 분사무소 혹은 업무대행인에게도 송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그 간편성 때문에 국제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송달방식이다.

한·중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제13조에 따르면,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송달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한 증명서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송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서류가 송달된 경우 송달 증명서에는 서류의 수령인의 성명과 수신인과의 관계, 송달일, 송달장소 및 송달방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송달증명서는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

### 3) 공시송달

상술한 송달방식<sup>21)</sup>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시 송달하려는 소송서류의 내용을 국외에 발행하는

21) ① 조약에서 정한 방식, ② 외교결로를 통한 송달, ③ 중국의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영사관예의 송달, ④ 피송달자의 대리인에 대한 송달, ⑤ 피송달자의 영수대리인에의 송달, ⑥ 우편송달

신문 혹은 적당한 장소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공시한 날부터 만 6개월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방식으로 기소장을 송달하거나 혹은 소환하고 공시송달기간이 만료된 후 응소를 하지 않아 인민법원에서 결석판결을 한 후라도 여전히 재판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재판서류를 공시송달하여 만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0일의 상소기간에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1심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sup>22)</sup>

### 3. 미국법에 따른 방식

#### 1) 우편에 의한 송달 또는 사적 송달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에 대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나 사적 송달 또는 사인(私人)송달이 적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적 송달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또는 전문송달업체나 한국 내 변호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송달의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취인에게 우편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송달을 말한다. 사적 송달 중 우편 경로를 통하여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인이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인 피고가 미국 내에 송달을 받을 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우편에 의한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의 가입국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협약상의 유보를 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나(제10조 a)), 우리나라와 같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행해지는 바, FRCP 4(f)(2)에 따르면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은 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2) 章武生主編, 前掲書, p.583

- a. 한국의 일반관할을 가진 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해 한국법상 규정된 방법
- b. 증인신문촉탁서(letter rogatory)에 대하여 한국 당국이 지시하는 방법 또는
- c. 한국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unless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foreign country),<sup>23)</sup> (i) 소환장과 소장 사본의 직접적인 교부 또는 (ii) 송달을 받을 당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법원서기(clerk of the court)가 발송한 서명된 수령증을 요하는 형태의 우편(by any form of mail requiring a signed receipt, to be addressed and dispatched by the clerk of the court to the party to be served)

즉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국 법원의 서기가 FRCP 4(f)(2)(c)(ii)에 따라 한국인 피고에게 직접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첫째, 미국 법원이 한국인 피고에게 직접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 그것이 우리나라법상 금지되어(prohibited)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직접 우편에 의한 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소송의 결과 미국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동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우편에 의한 송달과 사적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취지에 반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계약국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사건 판결<sup>24)</sup>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법원이 한국기업에 송달하는 대신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를 한국 기업의 '비자발적인 대리인(involuntary agent)'으로 보아 송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 FRCP 4(f)는 외국송달과 관련하여 외국의 주권을 종전보다 훨씬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먼저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우편에 의한 송달 방식은 송달을 받는 외국국가가 이 방식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23) 1993년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외국에의 송달방법이 당해 외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미국에서의 절차진행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법상의 송달방법의 금지 여부가 의미를 갖는다.

24) 486 U.S. 694 (1988)

인정하는 제한을 가하였다.<sup>25)</sup> 또한 송달관련 국가조약, 예컨대 1965년의 헤이그 송달협약은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외국송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sup>26)</sup>

미국의 국내법에 대한 헤이그송달협약의 우선적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헤이그송달협약은 '외국에서 송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27)</sup> 만일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외국에 있는 자에게 '국내에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헤이그송달협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흔히 미국에서는 국내송달의 방식을 통하여 외국송달의 효과를 달성하고, 이로써 헤이그송달협약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공시송달이라는 국내송달로 외국송달을 의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적법절차 위반의 위험성 때문에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둘째, 외국상사기업에 미국 내에 송달영수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법적 의무<sup>28)</sup>를 활용하여 국내의 송달영수대리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이 있다. 셋째, 외국의 모회사에 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의 자회사를 송달수령권한이 있다고 의제하여 국내송달을 관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많이 활용된다. 상대방당사자가 법정지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또는 국내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경우에도 외국송달은 국내송달로 대체된다. 다만, 이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는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미국 내 송달영수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많은 주 또한 송달영수대리인을 둘 것을 요건으로 하여 자기 주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의 영업활동을 허가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영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영수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sup>29)</sup> 송달영수대리

25) 1993년 개정 FRCP 4 (f)(2)(c)와 종전의 규정인 FRCP 4(i)(1)(D)와 이에 기한 판결 Umbenhauer v. Woog, 969 F.2d 25, 32. (3d Cir. 1992) 참조 : 김용진, 『국제민사소송전략』, 신영사, 1997, p.127

26) 헤이그송달협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헤이그증거협약의 경우와 다르다. 외국에서 하여야 할 증거조사를 국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회피하고 있는 종전의 태도에 대하여 1993년 개정에서 추가된 FRCP 28(b)는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 -김용진, 전계서, p.127

27) 김용진, 전계서, p.132

28) 예를 들면, 5 U.S.C. §1339 (e)에 기한 자동차 제조업자의 의무

29) Companies Act (1985) Sec. 691 (1) (b) (ii), 695

인 선임요구로 인한 외국송달의 국내송달화는 국제사법공조 필요성의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법정지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사법공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에 반하는 부적법한 송달에 기한 미국 법원의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아 방어에 지장이 없었다면, 송달의 적법성의 결여를 이유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엄격하게 재판권 행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sup>30)</sup> 법원에 의한 직권송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송달을 공권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영사송달에 관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 다 2585 판결도 송달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았다. 그렇다면,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반하는 송달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그에 기한 외국 판결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송달요건은 패소한 피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주권(主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비록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sup>31)</sup>

여기서 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더라도 피고가 이를 적시에 수령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취지가 피고의 방어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기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주권침해의 경우에도 송달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긍정설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주권의 보호가 아니므로 피

30) 최공용, "외국판결의 효력", 『사법논집』 제18집, 1987, p.319 ; 석광현, 전제서(제1권), p.301

31) Schack, Haimo, Internationales Zivilverfahrensrecht, 2. Auflage(1996), Rn. 848 (석광현, 전제서(제1권), p.302, 주 142)에서 重인합)

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부정설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주권개념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정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sup>32)</sup>

이러한 사실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송달에 관한 기본적으로 상이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헤이그협약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까운 장래에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국제사법공조의 한계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미국법원에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송달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sup>33)</sup>

개정 FRCP 4(f)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송달과 관련하여 미국은 점차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예컨대 우편에 의한 미국의 송달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그러한 송달방식을 금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법규해석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과의 조약체결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약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다자(多者)조약, 특히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는 방법과 미국과 개별적으로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과 송달에 관한 조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국간에 간편하고 신속한 사법공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법원대 법원 간에 직접송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송달방식 채택도 가능할 것이며, 관할기관 사이의 송달 이외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다는 유보를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침해적 송달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양자조약의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로서는 그 밖의 모든 외국과의 송달공조 체계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국제화에 상응한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32) 석광현, 전계서(제1권), p.303 참조

33) 김용진, 전계서, p.132

34) 김용진, 전계서, p.128

#### 4. 프랑스법에 의한 방식

그런데, 로마법계에서 채택되고 있는 remise au parquet의 경우에는 영미법계와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를 위시한 로마법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송달은 (프랑스의 경우) 검찰청에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가능하고,<sup>35)</sup> 이 경우 집행관은 송달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송달받을 외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우편송달과 같이 송달의 효력은 검찰청에 교부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송달서류를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36)</sup>

1893년부터 시작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송달과 관련된 사법공조를 논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위와 같은 프랑스의 송달제도인 remise au parquet에 있었다. 이에 따라 1893년의 제1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894년의 제2차 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1896년의 헤이그민사소송법협약은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외교경로에 의한 송달방식의 원칙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1904년의 제4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1896년의 외교경로에 의한 송달원칙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1905년의 헤이그민사소송협약은 제1조 내지 제9조에서 영사송달의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이 같은 개정은 가입국가들에게 외교경로에 의한 송달방식을 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계를 나타냈다.<sup>37)</sup> 1905년 민사소송협약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remise au parquet의 완화를 요구하였던 독일 대표단의 항의가 무위로 끝났고, 오히려 모든 조약국은 remise au parquet이든 우편송달방식<sup>38)</sup>이든 국내 송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한 송달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sup>39)</sup>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뒤 개최된 1951년의 제7차 회의에서는 영국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solicitors)에 의한 송달문제를 포함시키고, 소송비용 담보제공의무의 면제를 법정지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탄생된 1965년의 헤이그송달협약<sup>40)</sup>은 제22조에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1954년 3월 1일

35) Art. 684 I C. proc. civ. : 김용진, 전계서, p.130 주 95)에서 중引

36) Art. 142 I C. proc. civ. : 김용진, 전계서, p.130 주 95)에서 중引

37) 1905년 민사소송협약 제1조 제3항 참조

38) ZPO § 175

39) 김용진, 전계서, p.130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Civil Procedure)<sup>41)</sup> (이하 “민사소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내지 제7조를 대체함으로써 송달협약 당사국들 사이에는 1954년 민사소송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5년 송달협약은 종전의 영사송달 방식의 원칙<sup>42)</sup>을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이른바 직접송달방식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3)</sup> 협약당사국에서 오는 송달요청서를 수신하는 중앙당국은 우편을 이용하여 스스로 송달을 하거나 또는 관할법원에 송달의뢰를 한다.

그러나, 1965년 송달협약 또한 송달을 받을 자가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모든 송달을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특히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성행하고 있던 *remise au parquet*에 대한 규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1965년 송달협약은 유효한 내국송달에 의하여 외국송달을 대신하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여 의제적 국내송달을 방기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게 되었다.<sup>44)</sup> 이는 1980년 이후 협약 가입국인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송달마찰로 드러나고 있다.

### Ⅲ. 헤이그송달협약상의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에 대한 조치

#### 1. 국제민사사법공조와 해외송달

##### 1) 국제사법공조

국제사법공조,<sup>45)</sup> 특히 국제민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국제적으로 인

40)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년 11월 1일 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하 “송달협약” 또는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으로서 1965년 11월 15일 서명되어 1969년 2월 10일 발효되었다.

41) 이 협약은 그 후 분야별로 ① 1965년 헤이그송달협약, ② 1970년 헤이그증거조사협약과 ③ 1980년 법정외의 국제적 접근에 관한 협약이라는 세 개의 근대적인 협약으로 세분화되었다. 즉 체약국 간에는 송달협약은 민사소송협약 제1조 내지 제7조를(송달협약 제22조), 증거조사협약은 제8조 내지 제16조를(증거조사협약 제29조), 법정외의 국제적 접근에 관한 협약은 제17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대체한다.

42) 1954년 민사소송협약 제1조

43) 1965년 헤이그송달협약 제3조 제1항

44) 김용진, 전거서, p.131

식되었고 그 결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채택된 1954년 민사소송협약, 1965년 헤이그송달협약, 1970년 증거조사협약<sup>45)</sup> 등 세 가지 조약이다.

송달협약의 기본목적은 첫째, 송달문서의 수령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둘째, 촉탁국으로부터 수탁국으로의 문서의 전달방법을 단순화하며, 셋째, 통일된 양식에 의한 증명을 사용해 송달증명을 촉진하는 데 있다. 송달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에만 적용되나(제2조), 송달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영미법계에서는 형사만을 제외하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형사는 물론, 행정, 조세 등 공법상의 사건도 송달협약의 적용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해 1989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는 ① 민사 또는 상사의 개념은 협약의 독자적인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② 애매한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할 것이나,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법분야로 인정되는 조세사건은 제외되며, ④ 그 경우에도 계약국에 의한 송달협약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채택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가입하였고, 2000년 1월 송달협약 가입서를 네덜란드 외무부에 제출하여 송달협약은 2000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발효되었다. 송달협약은 최근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채택한 35개 조약 중 한국이 가입한 최초의 조약인데, 송달협약에의 가입은 한국이 국제민사사법 공조 분야에서 국제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물론 한국은 이미 1999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공조에 관한 서울선언의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9년 9월 17일 호주와 「재판상 문서의 송달, 증거조사

45)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란 넓게는 모든 국제적인 사법협력 또는 사법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의미하나, 주로 송달과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적인 사법협력을 뜻한다. -진성규, 전개논문, p.449 ; 이태희,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박사 교회기념), 1988, p.751 ; 석광현, 전개서(제2권), p.287

46)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년 3월 18일 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및 법률정보의 교환에 관한 민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공조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며, 동 조약은 2000년 1월 16일 발효되었다.<sup>47)</sup> 더 나아가, 한국은 중국과 2003년 7월 7일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은 2005년 4월 27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 2) 송달방법

### (1)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송달협약은 민사소송협약상의 해외송달을 개선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계약국으로 하여금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청서를 받은 중앙당국은 요청서가 송달협약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요청서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제4조, 제13조),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방식에 의해 송달하도록 한다(제5조).

① 공식적인 송달(formal service) - 국내소송에서 자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해 자국법이 정하는 방법(제1항 a호)에 의한 송달을 말한다.

② 특정한 방식(particular method) -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제1항 b호)을 말한다. 단, 이는 그 방식이 자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비공식적 교부(informal delivery) - 문서를 임의로 수령하는 수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제5조 제2항)을 말한다. 단, 그 방식이 자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sup>48)</sup>

### (2) 중앙당국을 통하지 아니한 송달방법

송달협약은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송달경로를 이용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제14차 회기에서 수령인에게 경고와 통지를

47)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송달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48) 석광현, 전계서(제2권), p.293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법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예컨대 문서를 지방경찰서에 교부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송달받을 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발적으로 문서를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연방 민사소송규칙(FRCP)처럼 수령인에게 통상우편에 의해 교부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반송하는 것은 이와 유사하다.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경로에 관계없이 송달의 정의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① 촉탁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8조). 이것이 이른바 '외교관 또는 영사에 의한 직접송달'이다.

② 영사관원(예외적인 경우 외교관도 가능)을 통해 목적지국의 지정 당국으로 하는 간접적인 송달방법(제9조).

③ 우편에 의한 송달(제10조 a)호). 이는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이다. 발송의 주체는 법원일 수도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다.

④ 촉탁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10조 b)호). 사법공무원간의 직접 송달은 가장 이상인 국제사법공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⑤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10조 c)호).

⑥ 그 밖의 직접적인 경로(제11조). 계약국들은 별도의 약정으로 그 밖의 직접적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국가들은 1974년 법원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허용하는 법률공조에 관한 노르딕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sup>50)</sup> 다만,

③ 내지 ⑥호의 송달방법은 목적지국이 그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⑦ 계약국의 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송달(제19조). 이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에 의한 송달을 가능하게 하려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삽입된 조항이다.<sup>51)</sup>

## 2. 송달협약 제10조에 따른 반대 선언

송달협약 제10조는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권

49) 유명일,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5, p.81 : 석광현, 전게서(제2권), p.294 : 진성규, 전계논문, p.477

50) 석광현, 전게서(제2권), p.295

51) 임치용, “헤이그송달조약을 가입함에 있어”, 『국제사법연구』 제2호, 1997, pp.79-80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295

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2. 촉탁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권능
3. 재판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직접 송달할 권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는 이른바 ‘우편에 의한 송달(Zustellung durch die Post)’ 내지는 ‘우편경로(postal channel)에 의한 송달’을 규정한 것으로, 영미법계의 송달 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우편에 의한 송달이라 함은 내국에서 완료된 송달을 단지 외국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인이 문서를 외국에서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행해지는 경우를 말한다.<sup>52)</sup> 전자의 경우 단순한 통지이나, 후자의 경우 송달 자체를 외국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 송달을 주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수령국의 동의가 없는 한, 수령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sup>53)</sup> 즉 우편에 의한 송달을 허용한다면, 중앙당국을 두어 그로 하여금 외국의 부적법한 송달요청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편에 의한 송달의 주체는 외국의 법원일 수도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이른바 ‘사적(私的)송달’ 또는 ‘사인(私人)송달’이다. 사적송달은 당사자(또는 소송대리인)가 직접 또는 전문송달업체 또는 송달받을 자가 있는 국가의 변호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다. 사적송달 중 우편경로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적송달이자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 된다. 여기서, 당사자가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 목적국의 주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 목적국의 주권침해의 문제를 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54)</sup> 우편에

52) 이를 편의상 ‘우편송달’이라고도 부르나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우편송달(Zustellung durch Aufgabe zur Post)’(우편에 부(付)하는 송달’ 또는 ‘발송송달’이라고도 한다)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등이 없는 당사자가 송달영수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점에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된다.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189조).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p.368

53) Pfennig, Günter, "Die internationale Zustellung in Zivil - und Handelssachen", 1988, SS.65-66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0

54) Pfeil-Kammer, Christa, Deutsch-amerikanischer Rechtshilfeverkehr in Zivilsachen, 1987.

의한 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다수 계약국의 입장이고, 197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는 우편에 의한 송달은 목적지국의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한 바 있다.<sup>55)</sup>

송달협약 제10조의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해 재판상 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허용하나, 양자는 송달하는 자에 차이가 있다. 즉 제2호는 '촉탁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송달을, 제3호는 '재판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에 의한 송달을 규정한 것이다. 제2호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프랑스법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huissier'간에 직접적인 송달의 경우이다.<sup>56)</sup>

문제는 기타 권한 있는 자에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이 포함되는가의 여부인데,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사적인 송달을 허용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으나,<sup>57)</sup> 영국과 미국에서는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는 그에 포함된다고 본다.<sup>58)</sup>

한국은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2. 협약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 각 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나. 촉탁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직접 송달할 권능

다. 재판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직접 송달할 권능"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동조에 규정된 모든 간이한 송달방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즉 한국정부는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간이 송달방법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취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하여 해외송달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송달은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도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송달방식에 대해 반대선언을 하였다.

SS.123-124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0

55)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0

56) *Ibid.*

57) 임치용, 전계논문, p.69

58)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1

과거에는 특히 미국의 법원 또는 원고(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우편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한국이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일본과 달리 송달협약 제10조 (a)호에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했으므로 우편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송달협약은 해외로 송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송달협약 제1조 제1항), 해외로의 송달이 요구되는지의 여부는 법정지의 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 v. Schlunk 사건 판결<sup>59)</sup>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미국 법원이 한국기업에 송달하는 대신 한국기업의 미국 자회사를 한국기업의 비자발적인 대리인(involuntary agent)<sup>60)</sup>으로 보아 송달해 버리고 해외로의 송달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편에 의한 송달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은 현행법상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처럼 제10조 a)호에 대해 이의하지 않은 국가로<sup>61)</sup>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는가이다. 생각건대, 현행법상 우편에 의한 송달의 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이므로(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외국으로 송달을 하면서 예컨대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해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sup>62)</sup>

- 
- 59) 486 U.S. 694(1988) 위 사건에서는 ① Schlunk가 독일법인인 Volkswagenwerk Aktiengesellschaft의 미국 자회사에게 한 송달을 모회사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는가와 ② 그 송달이 송달협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송달이 일리노이주법과 연방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경우 송달이 미국 내에서 행해졌으므로 외국으로의 송달에 적용되는 송달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1
- 60) 이와는 달리, 국제거래, 특히 국제금융거래에서는 자발적으로 송달대리인(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1
- 61) 일본도 제10조 a)호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논의는 일본에로의 송달의 경우도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입장과 관련해 제10조 a)가 적법한 송달의 경로를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미국 법원의 판결도 나뉘어 있었던 바, 일본은 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a)호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우편에 의한 송달이 일본의 주권침해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 유명일, 전계논문, pp.97-104 : 임치용, 전계논문, pp.101-104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2
- 62) 이태희, 전계논문, p.783 : 유명일, 전계논문, p.118 :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2 :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견해로는 진성규, 전계논문, p.479이 있다.

### 3.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paragraph)에 따른 '피고 보호' 선언

#### 1)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

송달협약은 신속한 해외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보다 원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송달협약 제15조 제1항은 원·피고간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다.

“소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부되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을 해서는 아니된다.

1. 그 문서가 국내소송에서의 문서송달을 위해 피촉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동 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자에게 송달되었을 것
2. 그 문서가 이 협약에 규정된 다른 방식에 의해 피고 또는 그의 거주지(residence)에 실제 교부되었을 것

또한 상기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송달 또는 교부는 피고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을 것.”

위 제1항의 취지로부터 명백하듯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달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촉탁국의 법원은 재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제15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 계약국은 판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1. 문서가 이 협약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송부되었을 것
2. 문서의 송부일부터 최소한 6월 이상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경과했을 것
3. 피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증명이라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못했을 것.”

피고 불출석시의 재판에 관한 송달협약 제15조는 '결정적인 타협'이라고 한

다.<sup>63)</sup> 그러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송달협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제1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제16조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피고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피고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를 구제한다.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함으로써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동조의 요건 구비시 우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 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판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판결을 할 수 있다.

가. 문서가 이 협약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송부되었을 것

나. 문서의 송부일부터 최소한 6월 이상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경과했을 것

다. 피촉탁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어떠한 종류의 증명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못했을 것.”

## 2) 공시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개정 요부

그런데, 송달협약 제15조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한 뒤에 비로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송달협약과 민사소송법의 해석상 제15조의 요건 구비시 우리나라 법원이 공시송달 없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96조가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과 모순되므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송달촉탁일

63)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03

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sup>64)</sup>도 있으나, 제15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우리나라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막바로 재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 하면, 송달협약은 동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제15조의 요건이 구비되는 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65)</sup>

#### IV. 결 론

우리나라가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한국의 법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난 50여년간 이룩한 것보다 더 큰 국제화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호주의에 의존한 사법공조방식에서 탈피하여 한국과 협약당사국 소송서류 전달방법을 단순화하고 협약의 증명서를 이용하여 해외송달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송달받을 자에게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시간 안에 송달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취한 위에서 본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한 것이 적절함은 물론이고, 송달협약 제10조에 따른 이의 선언은 다자조약에 의해 간이한 송달방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을 받을 자, 특히 한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해 간이한 송달방법이 모두 배제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지 못하다. 외국판결이 무조건 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차라리 외국판결을 승인하면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64) 유영일, 전계논문, p.121 : 참고로 일본은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의 선언을 한 뒤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4호(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상응하는 조항)에 송달협약 제15조 단서의 경우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65) 석광현, 전계서(제2권), p.310 : 물론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소송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것이다.

보호할 수 있고, 국제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본국 법원 역시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 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수효과도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조약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특히, 오늘날 해외송달은 국가주권의 행사라는 측면보다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소송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현실의 고지(actual notice)'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간이한 송달방법 전체에 대해 이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이다. 따라서, 양자조약을 통해 간이한 송달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15조 제2항의 선언을 함으로써 피고가 불출석하고 송달증명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적절하다.

중국도 헤이그송달협약 제10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대선언을 했고, 제15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은 법체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양국이 인접한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몇 개월씩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공조방식에서 탈피하여 법원 대 법원간의 경로를 개발하고 송달방식에서도 단순화된 간접송달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연구해 볼만 하다. 특히 헤이그송달협약의 제10조, 제15조 제2항에 대해 비록 동일한 내용의 거부선언을 했지만 양국간에는 거부선언을 한 공조방식의 제한적 실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한국과 호주에 이어,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이 2005년 4월 27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양자협약은 물론 헤이그협약을 토대로 한 국제민사사법 공조에 대한 이론체계가 더욱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주상,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사법논집』, 제6집, 1975  
 이태희,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박사 고회기념), 1988  
 임치용, "헤이그송달조약을 가입함에 있어", 『국제사법연구』, 제2호, 1997

- 정병석, “외국법원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사송달의 적법여부”, 『판례연구』, 제6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3
- 정연욱,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한 영사송달의 효력”, 『판례해설 1992』, 하반기 18권
- 진성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 『섭외사건의 제문제 (下)』(재판자료 제34집), 1986
- 유영일,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5
- 최공용, “외국판결의 효력”, 『사법논집』, 제18집, 1987
- 최효섭, “외국판결의 집행 -신분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제16집, 1989
- 허문일, 한·중 민사사법공조의 현황과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
- 김용진, 『국제민사소송전략』, 신영사, 1997
-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 개정사항, 1998
-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개정착안점, 1995
- \_\_\_\_\_, 민사소송법 개정안, 1998
- \_\_\_\_\_, 『법원실무제요 민사(상)』(전정중보판), 1996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2
- \_\_\_\_\_,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박영사, 200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徐宏, 國際民事司法協助, 武漢大學出版社, 1996
- 章武生主編, 民事訴訟法新論, 法律出版社, 2002
- Pfeil-Kammer, Christa, Deutsch-amerikanischer Rechtshilfeverkehr in Zivilsachen, 1987
- Pfennig, Günter, “Die internationale Zustellung in Zivil - und Handelssachen”, 1988
- Schack, Haimo, Internationales Zivilverfahrensrecht, 2. Auflage, 1996